

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5. 15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 5. 1. 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19. 5. 3.
다. 상정일자 : 제23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9. 5. 15.)

2. 제안설명요지

제안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 이용옥

가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을 통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속에서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구청장의 책무 및 돌봄 종합계획 수립(안 제3조~제4조)
 - 2) 돌봄 사업과 서비스 지원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8조)
 - 3) 돌봄 시설 설치·운영 및 보험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 - 4) 지역돌봄협의회 설치·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7조)
 - 5) 지도·감독 및 예산·결산(안 제19조~제20조)

3. 검토보고 (최종의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, 그리고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활동 지원과 맞춤형 정보·상담 등의 돌봄 서비스를 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돌봄 사업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·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였음.
- 동 제정안은 본칙 21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,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와 제4조(돌봄 종합계획 수립)에서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과 시책을 강구하고 매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목표와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,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의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정하였음.
- 또한, 안 제5조(돌봄 사업 지원)에서 제8조의 경우는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등의 돌봄 시행사업의 예산지원과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 있는 급식 제공 등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초등학교 저학년, 맞벌이 가정, 다자녀가구 등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순위와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급·간식비 등의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〈표 1〉 마포구 돌봄 시설 확충 계획

구분	연도	(2019.1월 기준 / 단위 : 개소)				
		2019	2020	2021	2022	2023
우리동네카움센터		2	4	5	5	-
						16

- 계속해서, 안 제9조(돌봄 시설 설치·운영) 및 제10조(보험)에서는 구청장은 돌봄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고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' 등의 위탁과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설 이용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다음은 안 제11조(지역돌봄협의회 설치)부터 제17조(수당 등)에서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·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을 위한 지역돌봄협의회를 임기 2년으로 9명 이상 15명 이내로 설치·구성하고, 협의회 참석 위원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고자 제척·기피·회피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연 2회의 회의 개최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.
- 안 제19조(지도·감독)와 제20조(예산·결산)의 경우는 돌봄 시설의 운영과 설비 기준, 안전사고 예방 및 종사자 관리와 재정관리상태 등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·감독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단체는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·승인 받도록 규정하였음.

4. 종합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양육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9.4.16.자로 「아동복지법」이 일부 개정되어 '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'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는 등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과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·간식제공, 그리고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돌봄 상담 등 초등학교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에 본 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, 「사회보장기본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론요지 : 없 음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기 타 : 없 음